◉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2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 사유	근거규정	
유한회사 하이하우징 (제2021-222호)	민○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2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 취소된 날로부터 인증제한 3년 ('26. 10.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인